

의안번호	제 471 호
의결 연월일	2013년 월 일 (제 319 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3년 4월 5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의안 번호	471
----------	-----

제출연월일 : 2013년 4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임부즈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체 : 불 입

6. 비용추계서 : 불 입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2·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바이오메디컬지구와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에어로폴리스지구, 에코폴리스지구 4개 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의 범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례사무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제4조(조직 및 기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 본부장, 부장, 지청장을 둔다.
2.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3. 청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본부·부·지청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옴부즈만) 경제자유구역청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옴부즈만을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 시, 군, 사업자를” “도 및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자”로,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21조, 제24조 및 제26조제3항 중 “시·군”을 각각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4조제7항,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을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충북경제자유구역안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하는 때는 간사 및 서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⑦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

구역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별표]

지구별 관할구역(제2조 관련)

지 구 별	관 할 구 역	비 고
계 (4개 지구)		
바이오메디컬지구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연제리 일원	바이오 밸리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 정중리 일원	
에어로폴리스 지구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신안리 일원	
에코폴리스 지구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장천리, 봉황리 일원	

관계법령 발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5호, 제7호, 제9호, 제12호, 제18호의 사무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1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관리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사무만 해당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제3항, 제51조, 제56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

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금지·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18조부터 제124조, 제124조의2,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9조, 제57조, 제63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4조 및 제101조에 따른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의 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

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51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6.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제47조·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상호 간에 지방세 및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⑥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지방자치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옴부즈만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는 법 제27조 및 이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사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받은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민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험 있는 자
2. 도시, 물류 또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경험이 있는 자
3.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또는 외국자본 유치에 경험이 있는 자

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 등

2.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인건비

제29조(음부즈만의 기능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음부즈만은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음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음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및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3. 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4. 제2호 및 제3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④ 음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음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음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음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 위 치 : 충주, 청원 일원 (약9.08km²)
- 사업기간 : 2013~2020 (8년/1단계)
- 내 용 :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허브 구축
- 추진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비용 발생 요인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라, 인건비, 사무실조성 및 운영, 전산장비 구축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 건설 시설비 등 제비용

3. 관련조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위한 전담행정기구(도출장소) 설치·운영
- 구역청 개청 : 5월말(예정) / 1본부 3부 1지청 10팀(47명)
- 충북경제자유구역 건설 : 3권역 4개지구 (9.08km²)

나. 추계 결과

- 전담행정기구 운영('13~'20) : 376억원(운영보조 59, 도비 317)
- 경자구역 건설('13~'20) : 19,942억원(국2,239, 지방비785, 민자16,918)

다. 재원조달방안

- 전담행정기구 운영 : 1차년도 31억원 : 1회추경(537백만원)+2회추경(2,563백만원)
2차년도 이후 345억원(국비+도비)
- 경자구역 건설('13~'20) : 19,942억원(국2,239, 지방비785, 민자16,918)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장 박승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억원)

구 분		1차년도 (’13년)	2차년도 (’14년)	3차년도 (’15년)	4차년도 (’16년)	5차년도 (’17년)	5차년 이후 (’18~’20)	계
세 입		31	2,043	3,436	6,032	3,550	5,226	20,318
운영비보조 도 비 기 타		3	7	7	7	7	28	59
		19	74	122	168	160	245	788
		9	1,962	3,307	5,857	3,383	4,953	19,471
세 출		31	2,043	3,436	6,032	3,550	5,226	20,318
인 건 비		17	35	35	36	36	108	267
구역청 개청		1						1
일반운영비		13	13	13	13	14	42	108
시 설 비		-	1,995	3,388	5,983	3,500	5,076	19,942
재원 조달		31	2,043	3,436	6,032	3,550	5,226	20,318
의존 재원	소 계	3	274	229	490	404	1,169	2,569
	보조금	3	7	7	7	7	28	59
	지방교부세	-	267	222	483	397	1,141	2,510
자체 수입	소 계	19	74	122	168	160	245	788
	지방세	19	74	122	168	160	245	788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9	1,695 (민자)	3,085 (민자)	5,374 (민자)	2,986 (민자)	3,812 (민자)	16,961